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35, 1998. 8, 453-474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에 대한 연구

홍 승 아*

이 글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특성을 성별분업의 전제, 남성적 노동모델,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의 변화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복지국가를 여성의 시각에서 분석해 볼 때, 복지국가는 성(性)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남성부양자/여성의존자라는 기존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성별분업이 전제되고, 지지되는 가족의 형태를 전형적인 가족의 이념으로 수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이념 하에서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모성의 책임과 보살핌의 특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부불노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둘째, 복지국가에서는 증대된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이전에 주로 여성이 담당했던 가정내 노동(자녀와 노인, 기타 의존자 돌보기)을 수행할 여러 가지 제도적 시설들을 마련하였으나, 현재의 남성적 노동모델 하에서는 불충분하다. 즉 제도적 시설들의 확보 만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안정된 노동/가정 생활을 양립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게 된다. 셋째, 복지국가에서 발견되는 가부장적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이전의 개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전제하고 있던 '사적 가부장제'의 형태에서, 점차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의 고용 및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여성의 의존형태는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공적 가부장제'). 이러한 변화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성의 의존형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의존의 대상이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여성들은 점차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적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Ⅰ. 서 론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경제가 악화되자 복지국가들은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들이 보수주의, 자유주의, 심지어는 좌파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쏟아져 나왔

* 울산전문대 가족복지과 조교수

다(심남, 1993;2). 서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으며(Mishra, 1984 ; Huber, 1984; Quinn, 1995 등), 즉 '고과세- 고복지지출- 단일적 혜택'의 복지구조는 치열한 자본주의적 국제경쟁에서 해당 국가의 경제력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생활수준이 향상된 중간계급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국내적인 지지기반도 상실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1].

한편 이와는 다른 입장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이들은 복지국가 내 불평등, 특히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성격에 대하여 주목한다(볼코스트와 심,1989; 달럽, 1989; Wilson, 1977; Orloff, 1993; Rose, 1993; Quadagno & Fobes, 1995 등 참조). 이들은 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의회와 지방정부 등 공식 정치 채널에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차별적이며, 대표성이 낮고, 남성보다 적은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볼코스트와 심,1989; 헤르네스, 1989 등 참조)[2].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관심은 복지국가가 성(性)에 의해 구조화 되어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여성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오코너는 서구에서의 복지국가 연구를 평가하면서 지난 20여년간의 복지국가 연구 중에서 매우 혁신적인 연구의 하나는 여성학적 시각에서 복지국가를 분석하는 작업이었다고 한다. (O'Connor, 1996a;48).

이 글은 여성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과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필자의 독창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주로 스칸디나비아 여성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논의를 재구성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을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기존의 정치이론에서 다루어지는 국가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여성의 관점에서 국가논의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성격을 성별분업, 남성적 노동모델,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의 변화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자립을 위한 일련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1) 물론 서구에서의 '복지국가의 위기' 논쟁은 주로 재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예산삭감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위기'가 주로 정부의 지나친 부담의 문제로 간주된다면 정부는 서비스 업무를 가정이나 시장으로 이전시킴으로써 피고용인이며 수혜자로서의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헤르네스, 1989;71).

2) 클라우스 오페(Claus Offe)에 의하면 여성과 여성조직은 일반 대중의 수준에서 볼 때 '정책 수혜자'라고 한다. 남성은 정치 시장에 접근하는 다양한 계급조직을 통해 대표권을 갖는데 반해, 정치 수행과정에서 여성은 수혜자이며, 남성은 참여자인 것이다(헤르네스, 1989;67에서 재인용).

Ⅱ. 기존 국가론에 대한 검토

복지국가의 논의에 앞서 기존의 정치이론에서 행해지는 국가이론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기존의 국가이론은 국가를 대등한 이익 집단간의 상호작용을 중재하는 중립적 매개자로 보는 자유주의적 다원론과 국가 관료조직내 엘리트가 핵심적인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소유하고 이들 엘리트조직이 국가의 중심이 된다는 엘리트론, 그리고 사회경제적, 계급적 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사회적 산물로서의 국가를 강조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이에 대해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자율성을 제시하며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일관성있게 설명하려는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박상섭, 1985;11-26).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은 자유주의적 다원론, 엘리트론,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이론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관 및 국가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3].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은 이전의 국가논의가 상부구조로서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경제환원론적이거나 도구론적인 성격의 한계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억압적 성격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비판한다(박상섭, 1985; 조형제, 1987 등 참조).

여기에서는 이들의 이론적 다양성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고 이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국가인식론적 관점에만 주목하도록 한다. 우선 이들의 가장 공통적인 출발점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의 도식에 대한 재구성을 시도하면서 국가의 자율성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국가를 계급지배의 단순한 도구로 단순화시키는 논의는 피해야 하며, 국가가 독자적으로 다른 영역 특히,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국가는 상부구조이기는 하나 단순히 토대의 피동적 산물만은 아니며,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재생산을 담당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회적 재생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국가는 제반 정책을 실시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한다.

조형, 이재경은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이 정치와 경제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국가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여전히 기능론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왜 국가가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며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국가가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결국 자본주의체제의 재생산이라

3)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은 정치적 다원론을 비판한 밀리반드(Miliband)의 도구주의적 국가론,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경제환원론을 반박한 풀란차스(Poulantzas)의 구조주의적 국가론, 알트바타(Altvata)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도출론, 하버마스(Habermas), 오코너(O'Connor)와 오페(Offe)를 중심으로 하는 프랑크푸르트학파 등으로 나눌 수 있다(박상섭, 1985).

는 국가의 기능으로 다시 귀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이 논리적 추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추상적 법칙의 논리적 도출 혹은 생산양식 환원론적인 논리의 전개에 그치지 않고 보다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분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자본주의사회의 재생산을 추구하는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논의들은 자본주의 국가에 특수한 성격을 부과하는 계급 이외의 여타 사회세력(제국주의 식민지, 세계체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인종 차별주의 등)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조형. 이재경, 1989;11-12).

여성학적 시각으로 국가를 볼 때 기본적으로 사회적 재생산을 국가의 기능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 그 역할을 생산영역의 재생산으로서의 사회적 재생산에 제한한데 반해 여성학자들은 사회적 재생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여성과 맺는 관계에 주목한다. 이들은 여성들의 삶의 제 영역, 즉 성, 결혼, 출산과 자녀양육, 취업, 임금 등 생산과 재생산영역들에 대해 국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국가는 두가지 차원에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주로 여성억압적 가족과 성억압적 기제를 통하여 여성억압을 유지하려는 국가정책을 펴게 된다. 우선 국가는 직접적으로는 자본주의에 유리한 특별한 가족형태를 유지시켜 주고, 간접적으로는 여성의 억압을 지탱해 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사회적 재생산을 위해 노동력재생산의 담당자이자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전수하는 장(場)으로서의 가족을 유지하려 한다. 또한 이 가족은 여성의 가족내 경제적 의존을 강화하게 되는 특별한 형태로서의 가족이다(McIntosh,1978; Wilson,1977 등 참조). 둘째, 성(sexuality) 억압적 측면으로서, 국가가 여성의 성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4], 혹은 여성의 모성(motherhood)의 제도화에 대한 가부장제의 요구를 통하여 여성들의 취업에 미치는 갈등을 중재함으로써 사회 제세력간의 응집력을 창출한다(Eisenstein, 1979).

결국 여성학자들은 현대사회의 모든 국가정책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여성의 삶과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국가와 여성억압/남성지배는 밀접히 관련된다는 인식을 공통적인 출발점으로 갖는다. 여성학적 시각에서 볼 때 국가는 여성억압/남성지배의 사회구조를 유지 혹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이때의 국가를 일컬어 계급구조의 재생산과 관련한 자본주의 국가라는 명칭에 대비할 때 가부장제 국가라는 명칭이 가능해진다(조형. 이재경, 1989;12). 달럽(Daherup)은 가부장제 국가(Patriarchal State)란 주로 남성의 이해에 부응하여 기능하는 국가 혹은 상부구조, 또는 여성억압을 유지 혹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로 정의한

4) 즉 출산과 성에 대한 국가의 통제, 그리고 성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표현(예를 들어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포르노잡지 등) 및 성폭력과 가정내 폭력에 대한 국가의 방조 등을 남성적 국가행위로 지적하고 있다(Mackinnon, 1982,1983).

다(달렙, 1989;96).

이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 복지국가를 여성학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위 선진 자본주의라고 하는 복지국가[5]에 내재해 있는 성차별적 혹은 가부장적 성격을 밝혀내어서 복지국가 내에서도 여전히 성차별적 요소가 내재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복지국가가 가부장적 성격을 갖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여성에게 억압적인가 혹은 그 내에서 나름대로의 해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성격에 대한 검토

복지국가를 여성의 시각에서 분석해 볼 때 복지국가는 성(性)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남성 중심의 가족형태를 가족이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복지정책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형성,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복지국가 내에서도 여전히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여성학자들은 이를 가부장제 복지국가(Patriarchal welfare state)라고 정의한다(Eisenstein, 1979; Walby, 1990; Wilson, 1977 등 참조).

Esping- Andersen 의 복지국가의 세가지 유형구분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의 중부 유럽의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조합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보수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나누어진다(Esping-Andersen, 1984을 Orloff, 1993;310에서 재인용).

여기에서는 보다 발달한 선진자본주의 사회 즉 북유럽의 복지유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성격을 검토해 보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복지국가가 지지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 내에서 발견되는 성별분업의 문제를 살펴보고, 또한 노동의 형태가 집안일을 하는 전업주부가 묵시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일제 노동이 가능한 남성노동 모델이라는 점, 나아가 서구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제조직의 변화특성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부장적 특성은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5) 여기에서 복지국가란 완전고용, 빈곤에 대한 보호를 위한 사회부조와 서비스의 발달, 동등한 기회부여의 원리에 기초한 교육제도 등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여기는 서부 유럽이나 북미의 국가들을 말한다(사쑨, 1989;154).

1. 성별분업의 전제

1) 성별분업적 가족 유지

여성의 시각에서 복지국가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국가의 성격 및 역할에 관해서이다. 즉 국가가 일정한 사회체계 및 가족체계를 지지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구조와 기능 속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McIntosh는 국가가 남성가장(male breadwinner)과 그에 의존하는 가정주부를 토대로 한 가족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억압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국가가 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구형태, 즉 주로 남성의 임금과 여성의 가사노동에 의존하는 가구형태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McIntosh, 1978). 예컨대 국가는 남성 부양자/여성 의존자라는 성별분업에 입각해 다양한 사회정책을 실시할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을 방조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여성억압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6]. 결국 국가는 자본주의적 재생산에 필수적인 가족을 재생산하기 위해 남성 부양자/여성 의존자의 성별분업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함으로써 젠더(gender) 분리에 합법적인 힘을 부여하며 동시에 이 분리를 재생산해 낸다(Wilson, 1977; McIntosh, 1978; Barrett, 1980; Mackinnon, 1982, 1983 등 참조).

Wilson은 근대 복지국가가 가족을 통제, 조절하는 것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족의 능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탁아정책이나 모성휴가 등의 노동복지정책은 값싼 여성노동력을 노동시장내로 유인하려는 정책이며, 여성 노동보호법안은 노동력재생산의 장(場)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족의 유지를 위해 의존적인 여성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복지수당 역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일시적으로는 증가시킨다할지라도 의존자로서의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유지할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성별분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서 Wilson은 현대복지국가는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같은 서비스를 통해 가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현대 복지국가가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내부구조를 가진 가족을 확립시키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복지국가 체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Wilson, 1977).

보다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에서의 가족제도란 가족임금체계(family wage system)를 지지하는 가족이다. 가족임금체계란, 한 가족 안에서 자신의 아내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6) 여기에서 국가는 가족에 대한 물적 지원을 통해 가족을 유지하려 하는데, 이는 가족이 노동력 재생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전수하는 장(場)이기 때문이다(McIntosh, 1978).

임금수입을 하고 있는 남성이 전제되고, 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아내는 가사일을 하면서 가정에 남아있는다는 형태로서의 성별분업화된 가족을 전제하고 있다(Barrett & McIntosh, 1980). 가족임금체계는 크게 세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현실과 상관없이) 남성들은 그들의 아내와 가족을 부양할만큼 충분한 임금을 벌어들인다는 신화를 강화시키고 영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둘째,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남성들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존재지워지며, 따라서 셋째, 이런 가정 속에서 바깥에 나와서 임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임금은 덜 중요하며 더 적은 돈을 위해 일한다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서 가족임금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많은 사회정책이 형성되는 토대를 형성한다.

또한 복지국가에서의 사회적 규범으로서 가족윤리는 전형적인 성별분업적인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여성들은 남성 생계부양자에 의존하면서, 그들의 지원하에 아이들을 기르는 것을 가장 적합한 가족윤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체제 역시 이러한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반영하고 있으며 재강화하는 측면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정책도 만약 가족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적인 지원이 제공되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생계부양자인 남편이 없는 여성들에게 주로 제공되게 된다(Abramovitz, 1986)[7]. 미망인 연금(widows' pensions)이나 요보호 아동가족 부조(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와 같은 복지정책은 여성의 일차적인 책임을 자녀양육에 두는 성차별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Kornbluh, 1996;194).

덴마크의 경우에도 1950년대 경기후퇴와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정'은 이념적으로 오히려 강화되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950년 27%에서 1960년 23%로 감소하였으며, 전업주부의 수는 1950년대 전반의 출산율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다. 당시에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가정주부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찬양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 정체성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었다. 동시에 자신의 수입만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남자가 훌륭한 남편으로 간주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는 가정주부-가장, 가사노동-임금노동, 여성의 일- 남성의 일 등에 대한 이념적, 경제적 양극화는 어느때보다도 더 극심하게 나타났다(볼코스트와 심, 1989;125).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인 전통적 핵가족(직업이 있는 아버지와 전업주부,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로 구성되는)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지지기반이 낮다. 이것은 현재 많은 남성 노동력인구 중 부양자를 가진 비중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8], 이에 반해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자녀와 다른 사람들을 부양할 경제적 책임을 갖는 절대 빈곤자라는 점 등을 통해서 지적되고 있다[9].

---

7) 실제로 AFDC 지원을 받는 사람의 80% 이상이 여성으로(Quadagno & Fobes, 1995;185), 혹은 Rose는 약 95%를 여성으로(Rose, 1993;320) 추정하고 있다.

8) 오늘날 미국가정의 16%만이 전통적인 핵가족적 스테레오타입의 형태로 존재한다(Den Bergh & Cooper, 1986)

9)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경우 빈곤 가정의 대부분은 편모가장을 가진 가정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여성가구

따라서 남성부양자/ 여성의존자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의 유지와 이러한 형태의 가족에 사회적 노동력재생산을 위임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가부장적 의도로 볼 수 있다(Gardiner & Smith, 1981; Barrett & McIntosh, 1980 등 참조).

한편 남성부양자/ 여성의존자의 성별분업은 나아가서 여성의 노동시장내 위치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여성은 주요 노동자가 아니고 2차적 노동자이고, 따라서 여성은 산업예비군으로 예비되어 있는 노동자군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여성의 저임금은 합리화될 수 있으며, 그외 노동시장내 여성노동의 제한성을 재강화시키게 된다(Barrett & McIntosh, 1980;61). 중요한 문제는 복지국가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남성부양자/여성의존자라는 전제 하에 많은 사회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Quadagno와 Fobes에 의하면 미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초기에는 전문직업 훈련과정에서의 여성배제 현상까지 있었고, 이후에도 직업교육 내용이나, 종류, 수준 등에서도 명백히 성계층화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2차적 노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Quadagno & Fobes, 1995).

이는 결국 여성의 빈곤을 야기하게 되는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성학자들은 여성이 빈곤계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남성들의 경우와는 다르며 이는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모성으로서의 여성의 책임과 성별로 분리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스칸디나비아에서도 빈곤계층은 여성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세대주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시간제로 일하며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헤르네스, 1989:64). 여기에서도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남성 부양자/ 여성의존자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재강화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은데, 이는 탁아소 등 노동복지시설의 제공 및 임금, 승진 등의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여성들의 임노동자화에 국가가 능동적으로 참여한 결과이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의 여성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차별을 적게 받고 있을지라도 자국내 남성들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위계적인 성별분업으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다(볼코스트와 심, 1989). 이들 나라에서도 여성들은 주로 저임금, 낮은 지위의 재생산 관련노동에 밀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간제 노동 등 비조직화된 부문에 파편화되어 있다. 이같은 밀집현상은 스칸디나비아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체 취업여성 중 교육의료, 서비스직

주 가정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편모는 공식적인 빈곤선 주변이나 빈곤선의 바로 위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영세민의 2/3가 여성이고, 전체 아동의 23%가 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Walker, 1983; 볼코스트와 심, 1989;141에서 재인용).

종사자는 50% 이상을 차지한다. 직업위계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여성들이 미숙련 생산직이나 사무, 판매직 등 하위직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태에서도 남성노동자의 대부분이 완전 고용인 반면 여성노동자는 반수에 달하는 45%가 시간제 노동으로 고용되어 있다(헤르네스, 1989).

따라서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성의 열등한 위치는 국가가 여성들에게 어머니와 노동자로서의 이중역할을 제도화한데서 비롯된다. 복지국가는 여성에게 노동시장과 가족 내에서의 이중역할 이데올로기를 부과하는데, 국가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력 수급과 국가의 예산삭감에 따라 가족을 강조하거나 혹은 노동을 강조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Kessler-Harris, 1975 참조).

2) 여성의 보살핌 노동(care-givers)

국가는 자녀, 노인 및 기타 의존자를 보살펴 주는 사람(care-givers)으로서의 여성의 부불노동을 통해, 가족내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보살핌의 노동(care-giving work)은 가족 내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부불노동이다. 그러나 이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은 부불노동의 성격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남성 혹은 공적 도움에 의존하게 되는 모순적인 관계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보살핌 노동은 일반적으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지도 못하고 있다(O'Connor, 1996b).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성의 보살핌노동은 개별 여성을 개별 남성이나 공적 도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동시에 이러한 부불노동으로 인하여 개별 남성이나 국가는 이들 의존자(자녀, 노인, 기타 의존자)에 대한 노동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국가는 남성부양자/여성의존자라는 기존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성별분업이 전제되고, 지지되는 가족의 형태를 전형적인 가족의 이념으로 수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이념 하에서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모성의 책임과 보살핌의 특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부불노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10) 여성은 양육 및 보호기능과 관련된 책임을 지도록 요구되므로 여성들에게 많은 물질적, 심리적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노동은 사회 정책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이는 이러한 노력이 무보수 노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들은 단지 물질적 부족만이 아니라 나쁜 건강, 고립, 스트레스, 사회적 낙인, 배제, 무력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여성의 삶을 빈곤하게 하는 영향을 갖는다(김미원,1995;61).

2. 남성적 노동모델

남성적 노동모델(the male model of work)이란 한 남성이 일주일에 40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일을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동시에 이러한 전제는 역으로, (남성이 바깥노동을 하는 동안)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할 전업주부를 전제해야 한다(사쑨, 1989;162).

사쑨은 복지국가에서 여성들의 이중역할을 분석하고 거기에 내재한 모순을 밝히며, 이와 대조적으로 가정과 일터와 국가 모두가 이러한 여성들의 변화한 삶의 진상을 진심으로 수용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갈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노동력에 대거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취업여성의 이중적 역할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가정, 노동의 세계, 복지국가 등이 모두 여성들이 아직도 전통적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조직되어 있다.

물론 취업여성의 증가와 더불어 여러 가지 자녀양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제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사쑨은 이 점에서 현재의 남성적 노동모델이 바뀌어야만 할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현재의 남성적 노동모델은 아무리 좋은 형태의 자녀양육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을 어떻게든지 분담하고 또 좋은 탁아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전일제 취업부모는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서두르는 시간과 저녁에 퇴근후 지쳐버리는 시간에만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취업부모와 아이들은 모두가 각각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장시간 노동, 남성들의 우월한 경제력, 전업주부의 존재를 가정하는 남성적 노동모델은 남녀 사이에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의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사쑨, 1989;162-162).

또한 남성적 노동모델은 노인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문제는 오히려 부모의 선택이 가능한 문제이지만, 부모나 늙은 배우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현재의 노인에 대한 보살핌의 형태는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녀로부터 배우자, 부모에 이르기까지 돌보기, 보살핌에 대한 계속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사쑨, 1989;160).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는 전업주부로서의 여성은 그리 많지 않다[11]. 따라서 이제는 전업주부의 완전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사실상 여성의 이중적 역할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변화는 무엇인가? 가장 이상적으로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직을 융통성있게 하는 일이다. 이것은 여성의 짐을 더는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남성의 가

11) 미국의 조사연구에서도 1970년에서 1988년 사이에 노동시장내 여성의 참여가 38%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장의 가족은 1970년에서 1989년 사이에 95%가 증가하였다고 한다(Morrill, 1992).

사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전일제 노동을 하면서 남성적 노동모델에 따라 일을 수행하려는 현실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자녀양육이나 기타 사적인 욕구나 필요들을 수행하려고 할 때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사쑨, 1989;162).

요컨대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정책이 남성적 노동모델과 성별분업을 전제로 수립되는 한, 복지국가는 특정한 생산관계를 반영하고 이러한 생산유형의 재생산을 돕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 임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이중역할을 제도화하는 복지국가는 갈등을 가지고, 따라서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새로운 역할과 제도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사쑨, 1989;154-156).

이러한 의미에서 남성적 노동모델은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쑨은 가정주부가 있는 가정과 전일제 바깥일을 하는 남성의 노동모델이 아니라, 기존의 성별분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동모델로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의 이전

1) 가부장적 성격의 변화

가부장제 복지국가는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자본의 요구와 이익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계급에 대해 경제적 양보를 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이러한 복지정책을 통하여 이제까지의 개별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형태가 국가에 대한 의존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학자들은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의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다(헤르네스, 1989; Holter,1976, 달럽, 1989에서 재인용; Eisenstein, 1979; 볼 코스트와 심, 1989; Walby, 1990).

Walby는 사적인 가부장제와 공적인 가부장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적인 가부장제(private patriarchy)란 가족생산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전유가 주로 가족 내에서, 개별 가부장들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반해, 공적인 가부장제(public patriarchy)는 국가나 고용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 기반을 두며, 여기에서는 보다 집합적인 전유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분리주의적이며, 종속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Walby, 1990;24).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하여 국가의 재생산영역의 개입이 증대되면, 여성들은 남편 개인보다는 국가정책과 제도적 서비스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즉 현대 복지국가에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예속은 국가에 대한 의존과 예속으로 변화하게 된다. 여성은 공공기관(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 공공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정치권력을 갖는 시민으로서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볼코스트와 심, 1989). 따라서 여성억압의 장은 사적 영역으로부터 공적 영역으로 점차 이전되고, 남성권력의 강화는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행해지게 되며, 따라서 국가권한에 대한 여성의 의존성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Eisenstein, 1979; Walby, 1990).

헤르네스는 한 국가내 여성의 지위를 시민, 피고용인, 수혜자로 나누어 정의한다. 우선 시민으로서의 여성의 지위는 분배정책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는 국가차원의 정치영역에서 결정되는데, 여성은 정당, 노동조합, 중앙관료, 대학 등에서 남성보다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즉 여성은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대표권을 갖기 어렵고 의사결정기구에서 배제된다. 둘째 피고용인으로서의 여성의 지위는 대개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그 중에 반 가량은 공적 소비 및 간접분배의 부문이다.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보다 지위가 낮으며, 여성고용은 대개 공공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수혜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는 어머니의 역할과, 여성의 장수경향과 질병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쉽게 수혜자가 될 수 있다.(헤르네스, 1989;68). Rose는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정부의 노동복지 프로그램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정부의 노동프로그램이 성(gender)뿐만이 아니라 인종(race)의 문제까지도 얽혀져서 항상 이들에게 계층화된 프로그램만이 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Rose, 1993). 중요한 논점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국가정책의 결정에 의존적이라는 사실과, 그만큼 여성이 복지국가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피고용인으로서의 여성의 지위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과 국가에 관한 최근의 이론들은 서구사회에 있어서의 공공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논의하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와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책임이 사적 영역(가족)으로부터 공적 영역(국가)으로 급속히 이전되어 가고 있으며, 이전보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에 예속되어 있으며,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에서 여성노동은 국가부문으로 흡수되고 있다. 국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용주이고, 이 여성직업 중 대부분이 건강, 교육, 사회서비스 등의 복지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스칸디나비아국가의 경우에도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이 유급노동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여성이 사적 부문보다는 공적 부문에서 고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스웨덴의 경우 공적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은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며[12], 노르웨이도 50% 가량이 된다. 특히 서비스 직업은 공적 부문, 사적 부문 양측에서 모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노르웨이에서도 유급노동에

12) 1989년 현재 스웨덴 여성의 57%가 공공부문에, 43%가 사적부문에 취업하고 있다. 이는 남성의 24%가 공공부문에, 76%가 사적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결과로 부문내 남녀의 비율은 공공부문이 여성 70%, 남성 30%이며, 사적부문이 여성 36%, 남성 64%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교사, 의료서비스직에 여성의 고용이 크게 확대되어 전체 여성의 46%가 이 부문에 취업, 부문내 성비는 여성 82%, 남성 18%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이건정, 1992;161).

종사하는 전체 여성의 80%(스웨덴의 경우 90%)가 공적 서비스직이나 세탁부, 판매사, 미용사, 여행사 등 사적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물론 다른 서구 국가에서도 재생산 부문이 공적 부문으로 바뀌어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국가가 이를 더욱 주도하고 있다(헤르네스, 1989;69).

한편 볼코스트와 심은 덴마크의 복지정책을 분석하면서 덴마크의 복지국가의 특징은 여성에게 매우 모순적인 발전의 과정이었다고 지적한다. 덴마크의 경우 현대적 복지국가는 오랜 역사를 갖는 것이지만, 포괄적인 복지경제의 발전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20세기 점진적인 복지국가의 발전은 사회민주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이는 국가개입의 주된 정치적 형태로 보여진다. 1960년대에는 국가의 개입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경제관계와 인간 재생산관계의 영역까지로 포괄되었다. 우선, 사회, 교육, 보건분야의 급격한 팽창 및 이에 따른 지출의 증가가 있었으며, 이들 부분이 전체 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복지경제를 창출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복지경제의 확대와 정부영역의 확대로 인간 재생산과 관련된 영역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가는 여러 정책들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위계적인 성별분업을 고수하여 왔으며,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여성의 권력과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제한하여 왔다는 것이다(볼코스트와 심, 1989;130).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여성억압의 장(場)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남성지배의 성격이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즉 '가족적 가부장제(family patriarchy)' 혹은 '사적 가부장제(private patriarchy)'라 불리던 남성지배가 약화된 반면, '사회적 가부장제(social patriarchy)', 즉 공적 영역에서의 남성지배가 강화되어 가고,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행해지게 된다는 점이다.

2) 변화의 이중적 결과

이상의 논의에서 복지국가가 가지는 가부장적 성격과 여성억압 구조를 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가부장제국가는 모순구조를 지니지 않는 완전한 여성억압의 도구인가? 혹은, 국가가 구체적으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복지국가는 여성들에게 일련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는 않는가 등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겠다. 우선 비록 사적인 형태에서 공적인 형태로 의존의 형태가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 속에서도 여성의 자립과 독립의 잠재력을 발견해 낼 수가 있다. 즉 복지정책이 여성의 한 남성에 대한 의존 외에 다른 대안을 여성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우선, 복지국가의 여성은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 공공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국가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사로서, 공무원으로서, 탁아소 보모로서, 의사로서, 간호원으로서 그리고 사회사업가로서 다른 여성 및 남성들에게 공권

력을 행사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달렙, 1989).

클라우스 오페(Claus Offe)에 의하면 여성과 여성조직은 일반대중의 수준에서 볼 때 '정책수혜자'로 정의된다. 이 말은 남성은 정치 시장에 접근하는 다양한 계급조직을 통해 대표권을 갖는데 반해, 정치 수행과정에서 여성은 수혜자일 뿐이며 참여자는 남성이라는 것이다.(오페,1981, 헤르네스, 1989;67에서 재인용). 그러나 점차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여성은 더 이상 사적 시혜자로서 국가에 의존할 수는 없게 된다. 때로는 국가(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기도 하며, 국가에 대하여 지원과 통제의 형태로 개입하게 된다(헤르네스, 1989;74-75).

둘째, 국가가 구체적으로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일련의 사회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 자립을 가능케 하도록 실질적인 기여를 한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덴마크의 경우 자녀양육정책은 지난 20여년간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영향력을 가졌었는데, 1960년대 중반에 탁아정책이 제정된 이래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탁아아동의 수가 서방세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망라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탁아법안은 여성들의 이익이나 요구충족을 위해서 수립, 실행된 것도 아니었고, 물론 양성간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가능케한 실질적인 한 요소로 기여하게 된 것이다(볼코스트와 심, 1989;133-135).

Miller 역시 가난한 편모가정을 위한 주요한 복지 프로그램인 AFDC(Aid to Families with children)를 지적하면서 이것을 두가지 성향으로 분석한다. 하나는 남성가장을 전제한 위에서 남성가장에 의존적인 여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독립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는 것이다. 즉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과 관계설정 없이 별개의 존재로서 경제적인 자신의 존재를 세울수 있는, 또한 동시에 일정한 자율성을 줄 수 있는 선택과 혜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Miller, 1990;163). 이는 즉, 경우에 따라서는 AFDC가 여성에게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AFDC가 확실히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것만으로는 말할 수 없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서도, AFDC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을 일과 연결시켜 줄 때 결과는 아주 고무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1988년 가족 지원법(Family Support Act)에 의해 AFDC 수혜자들 중에서 만 1세 이상의 자녀를 둔 신체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교육과 직업탐색, 직업훈련에 참여시켰다. 이후 이들을 일과 연결을 시켜주었을 때, 이들이 빈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들을 제공하였다고 한다[13]. 이 연구는 동시에 복지에 관해 만연해 있던 사회적 동의, 즉 복지는 저소득층의 정부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영속화시킬 뿐이라는 가정을

13) 주로 교육정도가 높고, 자녀 수가 적은 경우에서 지적된 사례들이다(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1992).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1992)[14].

스칸디나비아 여성학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초래하였으며, 여성들을 동원하고 그들의 주장과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확보해 준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여성과 국가 간에 일종의 '연대'(alliance)가 있음을 발견해 낸다. 즉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에서보다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유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달럽, 1989;116; 헤르네스,1989; 볼코스트와 심, 1989 등 참조).

Ⅳ. 결 론

이 글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을 밝혀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여성의 시각으로 복지국가를 볼 때, 복지국가는 성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복지국가내에 성차별적이며 가부장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우선, 복지국가는 특정한 가구형태, 남성가장과 그에 의존하는 가정주부를 토대로 한 가족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성별분업화된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전제로 인하여 여성은 가족내에서 남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전제되어지며, 또한 노동시장 내에서도 부차적이며, 차별적인 노동력으로 대우받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에게 강조되는 모성적 책임과 보살핌에 대한 여성적 특성으로 여성들은 자녀나 노인, 기타 의존자에 대한 부불노동을 제공하게 되며, 국가는 이로써 이들에 대한 국고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복지국가는 남성적 노동모델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남성적 노동모델이란 한 남성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바깥일을 한다는 것이 전제된 노동형태이다. 이는 동시에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할 전업주부를 전제로 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남성적 노동모델은 남성이 바깥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전업주부로서 충분히 지원을 해 줄 것이 전제되며, 또한 자녀나 노인들에게는 역시 전업주부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취업여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더 이상 남성노동자를 지원해 주거나, 자녀나 노인들을 보살펴 줄 전업주부의 전제는 현실성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취업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적인 제도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시설제도만으로는 결코 자녀나 노인부양의 책임이 안정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성별분업과 남성적 노동모델이 해체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문제해결

14) Seaberg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AFCD 의 경제적 지원효과를 지적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해 주는 가족정책을 주장한다(Seaberg, 1990).

이 되지 않는다.

셋째,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은 이전의 사적 가부장적 형태에서 점차 공적 가부장적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여성들의 공적 영역으로의 고용확대와 증가로 인하여 여성들은 점차 개별 가정에서 사적인 가부장에 의존하던 형태에서, 점차 고용 영역에서 공적인 가부장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넷째,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는 구체적으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성들에게 일련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달럽은 국가의 여성정책은 항상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오늘날 서구세계의 국가정책을 살펴보면 이러한 측면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한편으로는 복지예산의 삭감, 고용(실업)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들 국가의 여성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양성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 즉 동일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할당제 등의 적극적 조치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달럽, 1989;112).

복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성학자들에 의하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복지란 사회적 통제와 성적 규제의 수단으로서의 공적인 가부장제(public patruarchy)(Kornnluh, 1996;172), 혹은 복지국가는 양성을 분리하여 여성을 가치 저하시키고, 여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집단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가부장적 필요성"(patriarchal necessity)으로 보기도 한다(Miller,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여성학자들은 복지체계는 진보적인 측면과 억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Kornbluh, 1996; 172-173).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지정책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정책이 여성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립과 경제적 독립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다.

여성의 삶은 공적 재생산과 사적 재생산간의 의존성(국가와 가족간의 의존성)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상호의존성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근대국가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나 사적 노동시장보다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헤르네스, 1989;74). 그러므로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다(윌리암스, 1989:117; Van Den Bergh & Cooper, 1984). 복지가 성에 의해 구조화되지 않는, 성별분업화되지 않은 복지의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15].

15) "복지의 개념이 더 이상 여성의 종속 혹은 성별분업을 지지하지 않도록, 더 이상 남성 가장 중심의 핵가족

둘째, 따라서 복지의 사회적 관계(the social relations of welfare)도 역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윌리암스, 1989;117). 여성이 단순한 복지수혜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자, 서비스 제공자로서 보다 의미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공적영역에로의 여성참여가 개별 남성에의 여성의존에서 공적영역으로의 의존이라는 단순한 이전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참여와 자립의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혜경은 한 시대의 사회복지제도나 법체계는 그 시대, 그 사회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정의 기능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은 여성과 가정에 대한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종속변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과 사회관계를 창출하고 사회구조의 변동을 주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독립변수로서의 측면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이혜경, 1990;60).

셋째, 위의 두가지 변화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복지국가가 가정하고 있는 기본전제이자 우리사회의 기본전제이기도 한 공사영역분리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우리사회가 구조화시키고 있는 공사영역 분리를 극복하고, 이 이분법 하에서 전제되는 정형화된 가족개념을 탈피하는 일, 그리고 남성 부양자/ 여성의존자의 성별분업을 타파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비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일, 여성의 보살핌노동을 무임으로 사용하면서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의무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일 등이 모두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성별분업을 가정하고, 여성의 보호책임을 개별가정의 문제로 방치해 두는 정책을 중심구도로 삼는 전제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며, 지금까지의 공/사 구분을 해체하여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복지국가가 전제로 가지고 있는 노동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모델- 남성(earner)과 여성(carer)의 이분법적 역할로 구성된 가족을 가정하는 모델-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최은영, 1995;431-432).

이 글은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경험연구들을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여성복지에 대한 고찰이 1980년대의 북구 여성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집중되었고, 결과적으로 1990년대의 논의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달렙은 국가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달렙, 1989). 또한 국가가 여성종속을 유지 강화해 왔는가 아닌가에 대한 결론 또한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역사적이고 비교국가적인 관점에서 공공정책과 그것이 여성들에게 초래하는 결과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재구성되는 것이다"(윌리암스, 1989;117)

참 고 문 헌

김미원. 1995.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26호

박상섭. 1985. 자본주의 국가론. 서울: 한울

이건정. 1992. "사회민주주의하의 스웨덴 여성". 여성과 사회. 제3호

이혜경. 1990. "사회복지관련법과 여성". 한국여성학. 제6집

이혜경. 1994. "성차별 문제" 최일섭. 최성재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심남. 1993. "한국의 복지정책과 국가". 이화여대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조형, 이재경. 1989. "국가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여성학논집. 6집

조형제. 1987. "자본주의국가의 형성과 기능". 윤한택. 조형제외. 사회과학개론. 백산서당

최은영. 1995. "여성복지부문 평가 및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동풍

헤르네스, 헬가. 1989. "여성과 복지국가:사적의존에서 공적의존으로의 변화". 사순, 한국여성개발원역, 여성과 국가. 서울:한국여성개발원

달럽, 드루드. 1989. "개념의 혼돈-현실의 혼돈: 가부장제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과 국가.

볼코스트와 심. 1989. "여성과 선진 복지국가- 새로운 가부장적 권력관계". 여성과 국가.

사순, 앤. 1989. "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복지국가의 모순". 여성과 국가.

윌리암스, 피오나. 1989. 사회복지정책. 이영철외 역. 말길, 1994

Abramovitz. 1986. "Social policy and the female pauper: the family ethic and the U.S. welfare state." Bergh & Cooper(eds.). *Feminist visions for social work.* Silver spring: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Barrett, M. 1980. *Women's oppression today.* London:Verso

Barrett, M. & M. McIntosh. 1980. "The 'family wage': Some problems for socilaist and feminists." *Capital and class.* Vol.4. No.11.

Eisenstein, Z. 1979. *Capitalist Patriarchy and the Case for Socilaist Femin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Esping-Andersen. 1990.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Orloff. 1993에서 재인용.

Gardiner, J. & S. Smith. 1981. "Feminism and the alternative economic strategy." *Matxism today."* October 1981.

Holter, H. 1979. "Om Kvinveundertrykkelse, mannsundertrykkilse og herskerteknikker." in Tordis Storen and Tone Shou Wetlesen(eds.) *KvinneKunnskap,* Oslo. 달럽에서 재인용

Huber, J. 1984. "Public help and self help." *Futures.* Vol. 16. pp. 139-145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1992. *Cobining work and welfare: an alternative anti-poverty strategy.* Washington: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Kessler-Harris, A. 1975. "Stratifying by sex: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working women." Edwards, Reich & Gordon(eds.). *Labor market segmentation.* Lexington: D.C. Heath and Co.

Kornbluh, F. 1996. "The new literature on gender and the welfare state: the U.S. case." *Feminist studies.* 32. pp.171-197

Mackinnon, K. 1982. "Feminism, Marxism, Method and the State: An Agenda for theory." *Signs.* Vol. 7, no. 3. pp. 515-544

Mackinnon, K. 1983. "Feminism, marxism and the state; toward feminist jurisprudence." *Signs.* Vol. 8 no. 4, pp. 635-658

McIntosh, M. 1978. "The state and the oppression of women." in A. Khun and A. Wolpe(eds.). *Feminism and Materialism.* London: Routeldge & Kegan Paul. 매킨토쉬. 여성과 생산양식. 서울: 한울 출판사로 번역되어 있음.

Miller, D. 1990. *Women and social welfare: A feminist analysis.* N.Y.: Greenwood

Mishra, R. 1984. *The Welfare State in crisis.* N.Y.:Saint Martin's Press

Morrill, W. 1992. "Overview of service dilevery to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Spring, 1992

O'Connor. 1996a. "Understanding Women in Welfare States." *Current Sociology.* Summer 1996. pp. 1-12

——— 1996b. "Caring Work: A Gendered Activity." *Current Sociology.* Summer 1996. pp. 13-28

Orloff, 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logical Review.* Vol. 58. pp. 303-328

Quadagno, J. & Fobes, C. 1995. "The welfare state and the cultural reproduction of Gender: Making Good Firls and Boys in the Job Corps." *Social Problems.* Vol. 42. No. 2.

Quinn, J. 1995. "Entitlements and the federal budget: a summar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National Academy on Aging. Washington

Rose, N. 1993. "Gender, race and the welfare state: Government work programs from the 1930s to the present." *Feminist Studies*. 19 no. 2. pp. 319-342

Seaberg, J. 1990. "Family Policy Revisited: Are we there yet?" *Social Work*. Vol. 35. No. 6. pp. 548-554

Van Den Bergh & Cooper. 1984. *Feminist visions for sicial work*. Silver spring: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Walby, S. 1990. *Theorizing patriarchy*. Oxford:Blackwell

Wilson, E. 1977. *Women and the welfare state*. London:Tavistok Publication

Abstract

A study of the Patriarchal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s

Hong, Seung Ah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the patriarchal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s. Increasingly, debates on welfare states are explicitl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tate, market and family. How these relationships are structured forms the core parts of the particular welfare states, that is they give shape to different welfare state regimes.

Although welfare states have developed incresingly,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sustain these states asymmetrical, unequal, even sexist. In this paper, I want to make these problems visible by the terms of gender division of labour, the model of male work and the changing characteristis of patriarchy.

Firstly,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we can point the fact that the welfare states are structured by gender. Welfare states take it for granted that our socitie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of gender division of labour, what is called male breadwinner/ female dependent. And the state takes this gendered family as the stereotype in our societies.

Secondly, it is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men and women to perform satisfactory life of work and family that welfare states provide childcare center on an extensive scale. This is because that our societies are runned by "the model of male work".

Thirdly, we can fi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patriarchy of welfare state are changing. These changes can be explained from the 'private patriarchy' to the 'public patriarchy', in other words, from the women's dependence to individual man to the dependence to the state/ public sectors. And also under these changes, we can find the potent possibilities for women to take economic activities and independent self-supports.

Tel : (052) 279-3234, (011) 399-8002
Fax :
E-mail :